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아시아 로우볼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

2. 변경 사유:

- 투자대상자산 추가(통화관련파생상품)

3. 효력발생(예정)일: 2025 년 05 월 15 일

4. 변경 주요 내용: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투자대상자산 추가	①<생략> 1.<생략> <u><추가></u> 2.~5.<생략>	①<생략, 현행과 같음> 1.<생략, 현행과 같음> 2. 투자활동,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대량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현금흐름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단, 투자자산 매각자금, 투자자산 매수자금, 해지대금 등 단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만기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통화관련파생상품” 이라 한다) 3.~6.<생략, 현행과 같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추가	<생략> 1.<생략> <u><추가></u> 2.~5.<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1.<생략, 현행과 같음> 2. 통화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3.~6.<생략,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투자제한 사항 삭제 및 추가	<생략> 1.~2.<생략>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6.<생략> <u><추가></u>	<생략, 현행과 같음> 1.~2.<생략, 현행과 같음> 3.<삭제> 3.~5.<생략, 현행과 같음>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택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7.<생략>	<u>행위</u> <u>8.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u>9.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u> <u>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 <u>11.<생략, 현행과 같음></u>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사항 정정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 <u>1.~4.<생략></u>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19조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제19조제2호본문, 제19조제4호가목 및 나목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⑥제19조제5호<생략>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생략, 현행과 같음> <u>1.~4.<생략, 현행과 같음></u>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제2조제5호, 제19조제2호, 제4호가목 및 나목,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⑥제19조제4호<생략, 현행과 같음>